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희원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현행 조례에서는 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공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요청 시기를 「지방

재정법 시행령」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에 다른 공유재산심의 대상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이는 상위법인 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」 제22조의2(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)제4항의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 것보다 강화하여 행정절차 간 이행순서를 정한 것입니다.

이에 동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국가정책사업 및 신설 사업 등은 신속한 행정 이행이 가능하도록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 수행의 시기를 상위법에 준용하여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하고자 합니다.

조례안 개정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공공건축심의 전에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실시할 수 있어, 주요 국가정책사업 및 신설 사업 실행시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안 제9조의3항 제4호를 신설하여 상위법인 「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」 제22조의2제4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국가정책사업 및 신설사업 등의 신속한 행정 이행이 가능하도록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 수행의 시기를 설계 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